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8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김경영, 이정인, 김제리, 봉양순,
이병도, 송도호, 김정환, 송정빈,
한기영, 박기재, 최정순, 이세열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신체와 환경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이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성인상담과 달리 청소년 상담은 상담동기가 부족하고 상담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아 청소년 안전과 행복 측면에서 청소년 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골자

가. 청소년 안전등을 위한 조치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도록 함

(안 제14조 7호)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은 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7. (생략)</p>	<p>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p> <p>-----</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제7항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제7항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시 비용이 발생하나, 청소년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상담·치료에 대한 기반조성 규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